

수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수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모집·양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1. 응시자격

- 수영구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우선채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1일 평균 2~4시간 단시간 활동 가능한 자, 15:30~19:30 활동 가능한 자, 영아(36개월 이하) 돌봄 가능한 자
-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치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방법

- 가. 1차 : 서류전형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나. 2차 : 인·적성 검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다. 3차 : 면접시험 - 해당 분야 전문성, 수행능력, 적격성 및 기본소양
(1차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며,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 라.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통장사본, 건강진단서 각 1부
※ B형 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병 및 정신질환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문구 포함) 제출

3. 응시원서접수처 및 접수방법

- 가. 공고기간 : 2022. 3. 17.(목) ~ 2022. 4. 12.(화)
- 나. 접수기간 : 2022. 3. 17.(목) ~ 2022. 4. 12.(화) 18시까지
- 다. 모집인원 : 10명 내외
- 라.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방문 접수 불가)
▶ 접수 홈페이지 : care.idolbom.go.kr

4. 제출서류

- ① 아이돌보미 활동 설문조사 1부 - 온라인접수자에 한하여 설문조사 구글폼 발송
-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급)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유치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 인·적성검사 일정 및 면접일정

- 2022. 4. 13.(수)~18.(월) 사이에 진행

※ 세부일정은 추후공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시간과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6.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안내

- 교육일정 : 2022. 5. 2.(월) ~ 5. 13.(금)
- 교육방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교육 40시간,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40시간
- 교육시간 : 일반과정 -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80시간
자격증소지자과정 - 기본교육과정 및 특화교육과정 16시간
- 교육비 : 일반 20만원(의무활동시간 이수 후 15만원 환급 조치)
자격증 소지자 2만원
교육 시작 후 교육 포기 시 환급 **절대 불가**
- 현장실습 : 교육수료 후 10시간(교육수료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7. 아이돌보미 활동

- 활동시기 : 현장실습 이수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
- 아이돌보미 직무 (**가사활동 제외**)
 - 시간제 돌봄 활동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 아동의 학습 보조
 - 영아 종일제 돌봄 활동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 처리됩니다.

라. 이용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로 인해 모집 시 활동 시간이 작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T.758-6187)로 문의바랍니다.